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위기청소년의 유형으로 고립·은둔 청소년을 명시하고(안 제2조, 제5조의2 신설)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립·은둔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, 교육,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의2 신설).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제공하는 복지지원으로 아동양육비를 명시하고(안 제18조의3), 복지지원 대상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에 신청자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의4 신설).
- 미성년인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그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, 가정폭력,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등이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아니하도록 함(안 제32조의2제1항·제2항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안 제32조의2제1항·제2항은 미성년인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, 가정폭력,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 연락하지 아니하도록 하고,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연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여기서 연락이란 입소 사실의 통보를 의미하는 것인데, “연락”이란 표현만으로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이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개 정 안	수 정 의 건
제32조의2(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) ① 청소년쉼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<u>연락</u> 하여야 한다. <u>다만, 가정폭력,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연락하지 아니한다.</u>	제32조의2(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) ① 청소년쉼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<u>그 입소 사실을 통보</u> 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삭제></u>
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와 <u>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</u> 보호자에게 <u>연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 <u><단서 신설></u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u>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<u>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 <u>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1. <u>가정폭력,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</u> 2. <u>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</u>

-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수정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혜 진)